

채권법 12

- 보충의견: 물권적 청구권은 애초부터 급부의 청구를 중심적 내용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과는 그 기본적 지향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를 인정할 필요가 바로 없게 되어 소멸하는 것이고, 이는 방해가 종료되거나 별개의견이 예로 드는 물건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 물건이 멸실하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소멸한다. 멸실하는 것이고, 핵심인 '지배'는 그 대상을 향한 권리가 없으므로, '지배'는 그 대상을 향하여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소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현을 위하여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실현을 위하여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실현을 위하여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실현을 위하여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실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더 이상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로써 바로 그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한다. 이러한 등기말소청구권의 당연 소멸은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권리, 즉 앞서 본 대로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는 성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소유권의 상실로 등기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매도인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매도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 전 등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그가 매수인에게 전보배상을 하여야 하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의무의 기초가 상실되어 아예 없어진 것이다.

- 이는 불법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다가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그가 이제 더 이상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의 소유물반환의무(민법 제213조 참조)가 이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없어지는 것일 뿐이고, 이를 그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파악하여 무슨 전보배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민법 제390조) 등의 채무불이행책입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반하므로, 그 한도에서 민법 제390조는 물권적 청구권에 준용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출처 :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2하,1064])

-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 : 독립한 청구권설
- -> 물권적 성질 + 채권적 성질
- □ 계약해제권 : 이행지체와 구별
- □ 대상청구권
- - 대상청구권은 1) 급부가 후발적 불능, 2) 그 급부 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3)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 학설: 일반적 인정설과 제한적 인정설

-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 (출처 :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 4581,92다4598 판결【손해배상(기)】 [공 1992.7.1.(923),1849])

-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당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참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이전에 등기명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위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 (출처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44(2)민,350;공
 1997.2.1.(27),286])